

(앞쪽)

신 분 증 (지역 연도-연번) 사 진 3cm × 4cm (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 영한 것) 성 명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시장·군수·구청장

70mm × 100mm(켄트지 180g/㎡)

(뒤쪽)

신 분 증 소 속: 직위(직급): 성 명: 생년월일: 위 사람은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 에 관한 법률」 제10조, 제15조,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지원시설, 자활지원센터 및 상담소에 근무하는 상담원 등 종사자임을 증명합니다.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시장·군수·구청장 직인
1. 이 증을 소지한 상담원 등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, 자활지원센터 및 상담소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구조활동에 동행할 수 있으며, 「성매 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해당하 는 경우 수사기관의 조사, 증인신문 등에 동행·동석할 수 있습니다. 2.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, 퇴직 등 반납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급청에 반납해야 합니다. 3.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.